

##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0

발의년월일 : 1993.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조정됨에 따라
-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 11건의 조직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직의 직급명칭을 조정된 명칭으로 개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외 10건의 조직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직의 직급명칭중
- '부기감' 을 '부이사관' 으로, '기정' 을 '서기관' 으로, '기좌' 를 '사무관' 으로, '기사' 를 '주사' 로 하고
- '수의관(4급)' 을 '수의서기관' 으로, '수의관(5급)' 를 '수의사무관' 으로 개정

###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786호, '92.12.26)

###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 기타참고자료 : 별첨

##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증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의 개정)충청북도공영개발 사업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단장) 제1항중 ‘부기감’을 ‘부이사관’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의 개정)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기정’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의 개정)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농림기좌’를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의 개정)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수의관(4급)’을 ‘수의서기관’으로 하고

제6조 제2항중 ‘수의관(5급)’을 ‘수의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의 개정)충청북도내수면개발 시험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수산기좌 또는 지방수산연구관’을  
‘지방수산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도유림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충청북도도유림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기좌’를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치산사업소조례의 개정)충청북도치산사업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농림기좌’를 ‘임업사무관’으로, ‘농림기사’를 ‘임업주사’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개정)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기정’를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의 개정)충청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기사’를 ‘주사’로 한다.

제10조(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중 ‘기정’을 ‘서기관’으로, ‘기좌’를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의 개정)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기정’을 ‘서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